



장비임대계약서

(이하 “갑” 이라 칭함.)와 (이하 “을” 이라 칭함.)와의 사이에 물품 의 대여(이하 “대여물건” 이라 칭함.)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갑	
상 호	
주 소	
전 화	t

제 1 조 대여물건의 임대료는(SET) 월사용료 원(원)으로 정하고 “을” 은 매월()일까지 “갑” 에게 은행자동예약이체로 선불 입금한다..

제 3 조 “을” 은 대여물건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주의(이면지사용 특히주의)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

주 소	
상 호	
주 소	
전 화	t

제 4 조 전조 각항에 위반할 경우 “갑” 은 “을” 에 대한 보상 없이 “갑” 의 단독의사로 계약을 해제예약이체로 선불 입금한다.

제 4 조 전조 각항에 위반할 경우 “갑” 은 “을” 에 대한 보상 없이 “갑” 의 단독의사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

전 화	t
상 호	
주 소	
전 화	t

제 4 조 전조 각항에 위반할 경우 “갑” 은 “을” 에 대한 보상 없이 “갑” 의 단독의사로 계약을 해제예약이체로 선불 입금한다.

제 2 조 “을” 은 “갑” 의 동의 없이 본 대여물건을 타인사용 또는 타인에 대여할 수 없다.

상 호	
주 소	
전 화	t



